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[서울여자대학교학칙]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4조 (재입학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(이하 “총정원”이라 한다.)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37조(연계융합전공) ① 셋 이상의 학과(전공)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학과(전공)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융합전공이라 한다.</p> <p>② 연계융합전공은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정의 연계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4조 (재입학) ① - - - - - - - - - - - <u>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7조(연계/융합전공) ① <u>둘 이상의</u> - - - - - - <u>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연계전공이라고 하고 둘 이상의 학과(전공)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융합전공이라한다.</u></p> <p>② <u>연계/융합전공은 제2전공</u> - - - - - - - - - - - - <u>이수하여야 한다. 융합전공은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소정의 연계/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한</u>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</p>

현행	개정안	비고